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 및 기타보전관리해역 근거 마련 등 〉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979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 성 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해양생태계정보체계 구축 대상 정보 추가	4
2.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시행	9
3.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 설치	16
4. 기타보전관리해역 신설	19
5. 부칙	27
[참고자료]	2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6. 7. 15.
3. 회 부 일 : 2026.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 이후의 관리는 해양보호구역별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제15차 UN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상·해양의 30퍼센트 이상을 보호지역과 보호지역 외의 효과적인 보전

수단(OECM)으로 보전·관리하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정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고 보전·관리체계가 마련된 해역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대상 정보 확대 및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기타보전관리해역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보호지역 외 해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보호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역으로서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등록된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4호의2 신설).

나.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대상 정보에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안 제7조제1항).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마. 해양보호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역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보전관리해역의 보전 및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해양생태계정보체계 구축 대상 정보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해양생태계정보체계에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해양생태도, 해양생물종 및 <u>서식지 정보</u> 등을 전산화한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이하 “해양생태계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 ----- ----- ----- <u>서식지</u> <u>에 관한 정보, 보호지역(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u> 등을-----.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체계 하에서 해양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양경관 등 해양과 관련한 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함)은 관리 주체와 근거 법률이 다원화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가유산청 등 4개 관계 부처가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7개 개별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지역을 각각 독립적으로 지정 및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국내 해양보호지역 현황 >

부처	유형	소관법률	면적(km ²)
해수부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1,689.5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14.1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관리법	899.47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2,513.66
기후부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3,195.68
국토부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94.85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명승·천연보호구역 등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002.37
총계			13,909.62

*자료: 해양수산부

이처럼 부처별·법률별로 관리 주체가 분산됨에 따라 전체 보호지역 지정 면적의 51.4%¹⁾에 달하는 구역이 서로 중복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부처 간 보유 데이터가 상호 연동되지 않아 지정 현황

1) 참고 「국내 해양보호지역 현황(’25.12)」

과악이나 중복 규제 해소, 통합적인 보전 정책 수립이 어려워 행정적 비효율과 정책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7조²⁾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해양생태계정보체계³⁾의 전산화 대상 정보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분산된 보호지역 정보를 표준화된 데이터로 통합·관리함으로써, 보호구역 간 중복 지정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다음과 같은 점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7조제2항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보호지역이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전산화 대상 정보에 포함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타 부처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유사 입법례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해양생태도, 해양생물종 및 서식지 정보 등을 전산화한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이하 “해양생태계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3)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정보체계를 해양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해양쓰레기 배출, 해양환경측정망,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를 통합·제공하는 “해양환경정보포털<<https://www.meis.go.kr/portal/main.do>>”의 일부 기능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음.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18조⁵⁾는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뿐만 아니라 “소관 분야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타 부처 소관의 보호지역의 변경·해제 정보 등이 신속하게 연동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보호지역을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양수산부는 대통령령에 「자연공원법」 등 타 부처 소관의 법률에서 지정·관리되고 있는 보호지역을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의 문구만으로는 현행법 외에 다른 법률 소관의 보호지역이 대통령령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유사 입법례인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⁶⁾에 따른 자연환경정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 협약」의 국내 이행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소관 분야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6)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보호지역(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망의 구축·운영 규정을 참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 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구축 대상정보에 보호지역을 추가하여 전 부처의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정보를 통합관리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임.

정보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보 등을 전산화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시행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지정, 변경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현행법 제28조에 기 규정된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 역시 동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제28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7조의2(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실태 및

현행	개정안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u>평가에 관한 사항</u> 4.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현행	개정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u>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u>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① -----제27조의2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지난 2022년 UN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내수면 및 해양·연안 지역의 최소 30%를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는 이른바 ‘30by30’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이에 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해양보호구

역 확대 및 관리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별 지역 중심의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그치고 있음.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법상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계획으로는 제9조⁷⁾에 따른 10년 주기의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과 제28조⁸⁾에 따른 5년 주기의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이 있음.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보전·관리 계획으로,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내용은 동 계획의 실천 목표별 세부과제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을 뿐이며⁹⁾,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개별 해양보호구역에 한정하여 수립·시행하는 특징이 있음.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 및 해양경관보호구역의 특별관리
3.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9) 참고 「제2차(2019~2028)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 현행법과 개정안의 계획 비교 >

구분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
근거	제9조	제28조	안 제27조의2
성격	국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최상위 종합 계획	개별 해양보호구역별 현장 실행계획	해양보호구역 분야 총괄·전략계획
주체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	해양수산부장관
주기	10년	5년	5년
범위	대한민국 관할 전 해역	지정된 특정 해양보호구역 단위	전국 해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포함)
주요 내용	-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추진방향 - 해양생태축 구축 및 생물다양성 보전 - 재원조달, 국제협력, 민간협력 등 종합사항	- 해당 구역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 - 주민 및 이해관계인 보호·지원 - 지역사회 발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정책 목표 및 방향 - 해양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 해양보호구역 관리 실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절차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 고시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 주민 의견수렴 → 고시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 고시

이에 개정안은 5년 주기의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도입하여 국가 전체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정·확대 우선순위와 연도별 추진목표 등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중장기 종합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이 기존 법체계 및 개별 관리계획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의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은 그 명칭이 현행법 제9조에서 “기본계획”이라 약칭하고 있는 해양생태계보전·관리 기본계획과 유사하여 법 문언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안 제27조의2제1항은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이 상위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면서 안 제28조제1항에서는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이라는 표현이 중복되고 있음.

따라서 법적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종합계획” 등 다른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과 관련된 핵심 계획이므로, 계획 수립 시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해양수산발전위원회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¹⁰⁾에 따라

1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해양수산발전위원회) 기본계획, 해양개발등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해양개발등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6. 해양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7.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8. 도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해양개발, 해양환경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현행법상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해양생태축의 설정(제9조의2),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제26조) 등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정안은 새로 도입되는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각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별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은 구역별 수립 시점이 다르고, 이번 계획은 국가 차원의 총괄 전략을 담고 있으므로, 특정 해양보호구역과 직접 관련된 구체적 변경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정책을 추진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임.

9.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0. 어촌·어항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 설치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9조의2(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의 설치·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후보지 발굴 및 생태계조사, 보호구역 모니터링 등 실무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공단 등 타 분야 전담조직 대비 인력이 상대적으로

로 부족하고, 개별 보호구역별 해양폐기물 수거, 종패(種貝) 방류¹¹⁾ 등의 주요 사업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의 관심도·역량에 따라 관리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 보호구역 관리 조직 비교 >

구분	국립공원	해양보호구역
현황	24개소 6,937km ²	40개소 4,178km ²
관리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공단
조직·인력	6개 사무소, 1개 센터 / 306명	1개 팀 / 4명

*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개정안은 법정 전담 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일원화되고 전문적인 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29조의2는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지원 업무의 범위나 위탁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있음.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10¹²⁾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전담기관

11) 바지락, 전복 등 어린 패류를 인위적으로 길러 바다나 갯벌에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 사업임.

12)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환경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2.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면서 비용 지원, 위탁기관 등에 대해서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 역시 수행할 핵심 업무(지정 지원, 생태계 조사, 관리 평가, 대국민 교육·홍보 등)와 해양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여 법률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전담기관인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설치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임.

3.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토양환경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타보전관리해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현행 보호지역이 아닌 구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조제14의2 및 제42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타보전관리해역의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 및 필요한 조치 요구 등 기타보전관리해역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4. (현행과 같음) <u>14의2. “기타보전관리해역”이란 해양보호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역으로서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제42조의2에 따라 등록된 해역을 말한다.</u>
15. · 16. (생략)	15. · 1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2조의2(기타보전관리해역의 등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해양보호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관계 법령, 계획 또는 협약 등에 따른 보전·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타보전관리해역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타보전관리해역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보전 가치를 상실한 해역

현행	개정안
<신설>	에 대하여는 기타보전관리해역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보전관리해역의 등록·해제 및 등록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기타보전관리해역의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기타보전관리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기타보전관리해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내용, 비용 지원 및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이하 OECM)이란 정식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지역 기반 관리를 통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를 창출하는 구역을 의미함.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및 OECM으로 지정·관리하는 ‘30by30’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국제사회 전반의 이행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정 해양보호구역(해양관할권 내 비율 2.09%)은 엄격한 행위 제한을 수반함에 따라 수산업·해상풍력 등 해양이용 수요와의 충돌 및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 지정 확대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규제 중심의 법정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넘어, 실질적 보전 성과를 담보하면서도 수용성이 높은 자율적 보전 구역인 OECM을 현행법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국가 해양생태계의 지속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정부는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2023.12.)¹³⁾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보호지역 포럼’을 통해 국가 차원의 OECM 통합 관리 기준 및 통합 DB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국내 연안·해양보호지역의 비율(2.09%)이 육상(17.3%) 대비 저조한 점, 해양의 경우 OECM 지정을 자율관리어업이나 갯벌 생태마을 등 수산정책 인센티브와 연계할 수 있어 현장 수용성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해양 분야에 별도의 OECM 도입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이러한 해양 분야 목표달성의 시급성 및 특수성과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OECM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3) 관계부처 합동,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2023.12.

둘째, 안 제2조제14호의2는 기타보전관리해역을 ‘해양보호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역’으로 제42조의2에 따라 등록된 해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타 법률상 지정된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까지 확실히 배제 내지 포섭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법정 보호지역 외에 해양생물 다양성에 기여하는 해역을 OECD¹⁴⁾으로 관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지역은 기타보전관리해역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42조의2제1항은 기타보전관리해역의 요건을 다른 법정 보호지역이 아닐 것(제1호),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것(제2호),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보전·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문구만으로는 어떤 해역이 등록 대상인지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정부의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에서는 무인도서, 해양용도구역, 자율어업대상지역, 보호수면 등을 주요 잠재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¹⁴⁾, 어떤 해역이 대상이 되는지 법률에 대강의 범주를 명시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여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4) 관계부처 합동,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2023.12.

넷째, 안 제42조의3제2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타보전관리해역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렴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음.

사전 부처 협의 없이 해양수산부가 기타보전관리해역을 등록할 경우 타 부처 관할의 해양·연안 관련 개발, 이용, 보전 계획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견 수렴 대상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⁵⁾

다섯째, 안 제42조의3제3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타보전관리해역의 사업 성과를 평가한 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사업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할 지자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는 규제 중심의 기존 보호지역과 달리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자율적 관리를 핵심 특징으로 하는 기타보전관리해역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지방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¹⁶⁾·「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15) 현행법 제9조(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등에서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1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9조(기본계획 등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효

활용에 관한 법률」 17)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평가 결과와 예산 지원(안 제42조의3제2항)을 연계하여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기타보전관리해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임.

울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7)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안 부칙 제1조)로 규정하고,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특례를 두는 한편(안 부칙 제2조), 최초의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이후 수립·변경하는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3조).

[표] 개정안 부칙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과 법 시행에 따른 특례 및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

하위법령 제정과 세부 지침 마련 등 행정적 준비와 국민 홍보를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하고(부칙 제1조),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시점(부칙 제2조)과 이러한 기본계획의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적용 시점(부칙 제3조)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임.

□ 해양수산부는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법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 등¹⁸⁾을 고려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 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¹⁹⁾

문 의 처

02)6788-5422

18) 법 통과 → '28년 예산안 반영('27) → 계획 수립 착수('28.상반기) → 수립 및 시행('28.하반기)

19)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국내 해양보호지역 현황('25.12)

□ 해양보호지역 지정률 : 2.09%

○ $9,189.95\text{km}^2 / 438,991\text{km}^2(\text{EEZ 포함 면적}) \times 100\% = 2.09\%$

※ $9,189.95\text{km}^2 = \text{해상보호지역 총계 } 13,909.62\text{km}^2 - \text{중복면적 } 4,719.67\text{km}^2$

부처	유형		소관법률	전체 개소수 및 면적*(km ²)			
				개소	합계	육상	해양
총계				1,751	43,519.00	29,609.38	13,909.62
기후부	자연공원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24	6,937.66	4,158.89	2,778.77
		도립공원		30	1,012.70	598.68	414.02
		군립공원		28	253.96	251.07	2.89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26.57	26.57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자체)			399	998.80	998.80	-
	특정도서		도서생태계법	260	13.85	13.85	-
	생태.경관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9	245.05	245.05	-
	생태.경관보전지역(시도)			24	37.98	37.98	-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33	135.76	135.76	-
	습지보호지역(시도)			6	2.14	2.14	-
	수변구역(4대강)		4대강 수계법	4	1,189.23	1,189.23	-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293	1,143.09	1,143.09	-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2	2,797.75	2,797.75	-
해수부	습지보호지역(갯벌)		습지보전법	17	1,683.35	-	1,683.35
	습지보호지역(시도)			1	6.15	-	6.15
	해양보호구역	생태계	해양생태계법	16	1,412.86	-	1,412.86
		생물		4	96.01	-	96.01
		경관		1	5.23	-	5.23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관리법	4	1,882.05	982.58	899.47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28	3,227.83	714.17	2,513.66	
국토부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녹지법	13	315.60	315.60	-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9,978.28	6,883.42	3,094.85
유산청	천연기념물		자연유산법	400	1,194.22	233.60	960.62
	천연보호구역			11	456.32	431.68	24.64
	명승			136	231.64	214.53	17.11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법	1	2,781.02	2,781.02	-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산림보호법	1	1,886.26	1,886.26	-
		생활환경		1	0.14	0.14	-
		경관		1	188.60	188.60	-
		수원함양		1	3,059.15	3,059.15	-
		재해방지		1	34.89	34.89	-

참고 2

생물다양성협약(CBD) 개요

- (명칭)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배경) 생물 종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우려와 미래세대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리우정상회의('92)에서 채택
- (목적) ① 생물다양성 보전 ②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 (주요일자) '92.6.5 채택, '93.12.29 발효
※ 우리나라 : '92.6.13 가입, '94.10.03 비준, '95.1.1 발효
- (당사국) 196개국(EU 포함, '24.3. 기준) ※ 생물자원 주요 수입국 미국 미비준
- (구성) 전문과 42개 조항, 부속의정서 2개(나고야, 카르타헤나)
※ 나고야 의정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

< 나고야의정서 >

- 조약명 :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목 적 :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생물자원주권 보장과 외국의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원산지국과 이익공유를 보장
- 주요일자 : '10.10.29 채택, '14.10.12 발효
- 당사국 : 141개국('24.3. 기준) ※ 한국의 경우 '17.5.19. 비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미비준

< 카르타헤나 의정서 >

- 조약명 :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 목 적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인한 인간의 건강 및 환경 보호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
- 주요일자 : '00.1.29 채택, '03.9.11 발효
- 당사국 : 173개국('24.3. 기준)
※ 한국의 경우 '07.10.03 비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생산국 미비준

참고 3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주요내용

비전 (2050 Vision)	자연과 조화로운 삶(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목표 (2050 Goals) (4개)	A 생태계(면적, 연결성, 온전성) 증대, 멸종위기종 멸종 경감, 유전적 다양성 보호 및 유지 B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가치화, 보존·복구·지속가능한 이용 통한 증대 및 유지 C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 D 2050 비전 및 GBF 달성에 필요한 생물다양성 재정 및 이행수단 격차 축소
실천목표 (2030 Action Targets) (23개)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① 지구 모든 육지와 해양에 생물다양성 통합 공간계획 수립 보장 및 생물다양성이 높은 중요 지역의 손실을 30년까지 제로화 ② 훼손된 담수, 해양 및 육지 생태계의 최소 30% 복원·보장 ③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특별히 중요한 육지·해양 최소 30% 보호지역, 기타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 통해 관리 ④ 멸종위기종의 복원 및 보전, 야생종·가축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위한 적극적 관리, 인간-야생동물 상호작용 효과적 관리 및 갈등 방지 ⑤ 야생종의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이며, 인간 건강에 안전한 이용·매매·수확 보장 ⑥ 침입외래종 유입률 및 정착률을 최소 50% 감소시키고, 주요 종 및 지역 중심으로 침입외래종 영향 감소·제거를 위한 퇴치·조절 ⑦ 환경 유실 영양, 살생물제를 절반 이상 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등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오염 감소 ⑧ 기후변화의 생물다양성 영향을 최소화, 자연기반해법 및 생태계기반 접근법을 통해 저감·적응·회복에 기여하고, 저감·적응 노력의 생물다양성 악영향은 회피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 ⑨ 야생종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 보호, 모든 사람(특히 취약한 사람들)의 사회·경제·환경적 이익 보장, IPLC의 관습적 이용 보장 ⑩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생산활동(농·수산·어업·임업 등) 지속성 유지 ⑪ 매체질 조절, 자연재해 보호 등 생태계 기능 서비스 복구·유지·증진 ⑫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의 녹지 및 수변공간 면적·질, 접근성 및 이익 증대 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접근하고 공정·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한 효과적 조치 이행과 주류화를 위한 방법 ⑭ 생물다양성 가치를 모든 정부 및 경제 분야의 정책·규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에 완전히 통합, 공공 및 사적 영역 활동 및 재정흐름에 동조 ⑮ 대기업, 다국적기업 및 금융기관의 생물다양성 의존도 및 영향을 평가·공개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⑯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 모든 사람의 지속가능한 소비·선택을 보장하고, 식량 및 자원 과소비에 의한 낭비 감소 ⑰ 생명공학기술로 인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감소를 위한 조치 수립·이행·강화 ⑱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25년까지 규명, 5,000억 달러/년 절감 ⑲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재정 자원을 매년 2,000억 달러 이상 동원, 개도국 금융 지원을 '25년까지 200억달러, '30년까지 300억달러 이상 지원 ⑳ GBF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 기술이전 및 접근 강화, 과학기술협력 촉진 ㉑ 인식·교육·연구 등 통해 생물다양성의 효과적 정책결정을 위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접근 등 보장 ㉒ 여성, 소녀, 청소년, 장애인, IPLC 등의 공평한 접근, 대표성 및 참여 보장 ㉓ 여성, 소녀의 토지와 자연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공평한 의사결정 보장
이행/평가	GBF의 내용을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반영하고, 지표 기반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지구적 이행점검 체계 구축

참고 4

현행법령상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관련 조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3. 해양생물의 서식환경 및 이동경로의 보호·복원에 관한 사항
4. 해양생태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교란 실태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양생태계 현황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7.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9의2. 인간이 해양생태계로부터 얻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세부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⑨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개발행위등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⑪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 및 해양경관보호구역의 특별관리
3.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7.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및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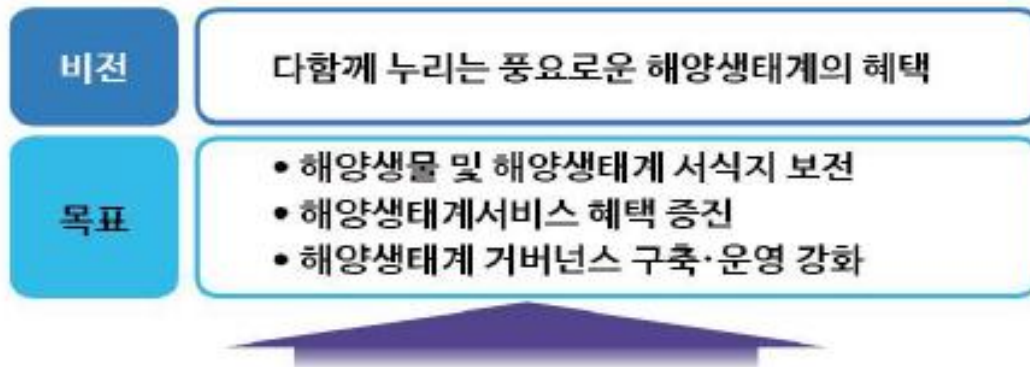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고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명칭
2.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3.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및 관리방향 등 주요내용

참고 5

제2차 2019~2028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5대 추진 전략	중점 추진과제 (16개)
1.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	① 해양생태 네트워크 구현 ②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강화 ③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 확대
2. 해양생물 보호·복원	① 해양보호생물 보호·복원 ② 안전한 해양생태계 조성 ③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물 보호·관리
3. 해양생태계 서비스 혜택 증진	① 생태계기반 해양공간 통합관리 추진 ②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 체계 구축 ③ 해양생태계서비스 증진
4.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반 선진화	① 해양생태계 조사 선진화 ② 해양생태계 평가 강화 ③ 해양생태계 관련 연구개발 강화 ④ 해양생태계 보전 인식 증진
5.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체계화	① 국가·지자체·지역주민 협력 추진체계 확립 ② 국제 동향 적극 대응 ③ 동북아 해양생태계 협력 확대

참고 6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현황

구역 명칭	지정일	관리계획 수립 현황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신두리사구해역	021009								재수립					재수립					재수립	
(2)문섬 등	021105							재수립					재수립						재수립	
(3)오륙도	031231			재수립						재수립					재수립					
(4)대이작도	031231		재수립							재수립					재수립					
(5)가거도	121130			지정	수립						재수립					재수립				
(6)소화도	121130			지정	수립						재수립					재수립				
(7)남형제섬	131129				지정	수립						재수립						재수립		
(8)나무섬	131129				지정	수립						재수립						재수립		
(9)청산도	131129				지정	수립						재수립				재수립				
(10)울릉도	141224					지정	수립					재수립						재수립		
(11)추자도	151229						지정	수립					재수립						재수립	
(12)토끼섬	161229							지정	수립					재수립					재수립	
(13)조도	171208								지정	수립					재수립					
(14)통영 선촌마을	200214										지정	수립						재수립		
(15)포항 호미곶	211231												지정	수립				재수립		
	240806																			
(16)울진 나곡리	221124													지정	재수립					
(17)관탈도	25411																	지정	수립	
(18)해장동유인도서	260707																		지정	수립
해양생물보호구역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가로림만	160728							지정	수립					재수립					재수립	
(2)고성 하이먼	191231										지정	수립						재수립		
(3)신도리	250411																	지정	수립	
해양경관보호구역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소항사구	181201									지정	수립					재수립				

□ 추진배경

- 제15차 UN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2030년까지 전 육상·해양의 30%를 보호구역 또는 OECM*으로 보전·관리할 것을 결의('22.12)
- * (OECM :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이란,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장기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을 일컬음
- 해양OECM의 발굴은 ①30by30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②우수한 생태계를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③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어려운 지역의 보호 필요성을 부각하는 준보호지역*의 기능을 수행
- * 해양보호구역만큼의 생태계보전효과나 보전가치는 있으나, 해상풍력이나 수산업 등 해양이용 수요가 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어려운 지역

□ 해양보호구역과 OECM 비교

- OECM은 보호구역과 달리 규제가 없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생태계 보전 효과를 가져오는 지역으로 보호구역의 대안으로 부상
- 특히 일부 보호구역이 관리 부실로 '종이 공원(paper parks)'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과 달리, OECM은 실질적 보전 성과에 주목
 - 또한 '현지 내 보전(in-situ)'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지역사회의 관리 방식을 존중하고, 원주민, 시민사회 등 생태계 보호 주체를 다양화

【보호구역과 OECM 비교】

	해양보호구역	OECM
목적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계 보호	생태계 보호 외 타 목적으로 지정 및 관리(관광, 어업, 군사 등)
관리 주체	중앙 및 지방정부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사회, 원주민, 시민단체, 학계 등
발굴 방법	「해양생태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지정	UNEP-WCMC(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에 보고
예시	습지보호지역, 환경보전해역 등	무인도서, 특정도서 주변해역, 마을 어장, 갯벌세계유산 완충구역 등

□ OECM에 대한 정의 비교

구분	UN 생물다양성협약 결정문,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지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명칭	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기타보전관리해역
정의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연관된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 경우에 따라 문화적·영적·사회·경제적· 기타 지역적으로 연관된 가치의 긍정적이고 장기지속적인 현지 내 보전 성과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운영·관리되는 지리적으로 규정된 지역 ²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 보전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며 관리되는 지역 으로서 제42조의2에 따라 등록된 지역
요건	1. 보호지역이 아닐 것 2. 지리적으로 규정된 지역/공간 3. 적합한 거버넌스 조직 4. 관리되는 5. 효과적인 6. 장기적 지속가능성 7. 생물다양성 현지 내 보전 8. 정보와 모니터링 9.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 10. 문화/영적/사회경제적/기타 지역적 가치	1.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닐 것 2.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 보전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일 것 3. 관계 법령, 정책, 관리 계획 등 관리 · 관할체계가 갖추어진 지역일 것
등록절차 (법적)		- 해수부장관이 등록 및 해제 가능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기타보전관리해역의 등록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0) a geographically defined area other than a Protected Area, which is governed and managed in ways that achieve positive and sustained long-term outcomes for the in situ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with associated 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and where applicable, cultural, spiritual, socio-economic, and other locally relevant values(CBD Decision 14/8, 2018)

□ OECM 주요 검토대상 유형(예시)

검토대상 유형		OECM 잠재자원
자연환경국민신탁	보전재산 / 보전협약지	10개소 / 9개소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휴식지	75.7km ²
	생물권보전지역 완충구역	완충구역 9개소
	하천의 특별보전지구	8개 하천 198km ²
해수부	무인도서 (절대보전 / 준보전)	140개소 / 550개소
	해양용도구역: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6,020.8km ²
	해양용도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1,637.3km ²
	해양용도구역: 안전관리구역	3,999.0km ²
	자율어업대상지역	1,133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관리
해수부 / 지자체	보호수면(수산자원관리법)	47.16km ²
지자체	해양보호구역 외 갯벌지역	2,489.4km ²
국토부	도시지역(녹지지역)	12,592km ²
	관리지역(보전)	10,116km ²
	보호지구(생태계)	28km ²
산림청	자연휴양림	국립자연휴양림 등 192개소
	전통사찰보존구역 / 사찰림	13.2km ² / 662.7km ²
문화재청	세계자연유산구역 완충구역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2개소
농식품부	중요농업유산	17개소
민간	기업 CSR 지역, 종교성지 등	보전가치, 근거/수단 미흡